

17.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□ 발의일자 : 2020년 4월 9일

□ 발의의원 : 하병문, 김동식, 배지숙, 송영헌, 윤영애, 이만규, 이영애,
장상수, 정천락 의원

□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
□ 상정일자 :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환경위원회(2020년 4월 22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하병문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하수도사업에 소요될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회전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근거를 확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회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충호)

□ 개정 취지

- 배수설비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를 확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 하고자 함.

□ 적법성 여부

-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용 중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전기금* 설치 근거를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.

* 회전기금 : 지방공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할 수 있음. 다만, 사업 예산 및 자본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.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,

안 제17조(회전기금 설치)에서 하수도사업에 소요될 투자재원의 확보 등을 위해 회전기금을 설치·운용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광역자치단체 하수도사업 부분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회전 기금인 만큼,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의 조성 과 운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붙임 1**전국 회전기금 설치현황**

연번	자치단체	관련회계	법규명
1	경기도 구리시	<u>하수도사업</u>	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2	강원도 강릉시	상수도사업	강릉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운영조례
3	강원도 삼척시	상수도사업	삼척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4	강원도 속초시	상수도사업	속초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5	경기도 시흥시	공영개발사업	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6	경기도 시흥시	상수도사업	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7	강원도 양양군	수도사업	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8	강원도 원주시	상수도사업	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9	강원도 인제군	수도사업	인제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10	강원도 정선군	상수도사업	정선군 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
11	강원도 철원군	수도사업	철원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12	강원도 태백시	상수도사업	태백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
13	강원도 홍천군	상수도사업	홍천군 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현황은?	○ 최근 몇 년간 요금현실화율(약 90%) 상승에 따라 3,500여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-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해당 없음.